

연동 한일베라체 파크뷰 입주자모집공고



※ 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안내

• 건본주택 운영안내

- 연동 한일베라체 파크뷰 건본주택은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건본주택(www.jeju-verace.co.kr)을 운영 할 예정이며,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사항은 건본주택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장 시 건본주택에서 실시·제공하는 검역·방역 절차 및 위생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분양계약 체결 목적에 한해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입장 전 및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
-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 건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체온계 측정, 손소독제 사용 등)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동 한일베라체 파크뷰 상담전화(☎064-747-0003)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2021.10.2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u-verac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관련 별표3)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더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협조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시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예시: 본 공동주택의 중도금대출은 무이자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개인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는 발코니 확장세대 기준으로 전용 50타입, 83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사용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2년 10월 31일(월)	2022년 11월 01일(화)	2022년 11월 07일(월)	2022년 11월 18일(금) ~ 2022년 11월 22일(화)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주택과 - 66632호(2022.10.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8길 34(연동, 미림주택)와 1필지(연동 276-13, 279)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5층 2개동 총 154세대(조합원 60세대, 보류지 1세대) 중 일반공급 93세대

※ 해당 아파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일단의 주택단지로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구역 내 10m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준공인가 이후 별개의 건축물(101동 70세대, 102동 84세대)로 관리됨.

■ 입주시기 : 2025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2000732	01	050.7246	50	50.7246	12.2563	62.9809	34.4841	97.4650	11.89	28	12	1
		02	073.4544	73	73.4544	19.9738	93.4282	49.9365	143.3647	17.22	28	28	2
		03	075.2890	75	75.2890	18.9086	94.1976	52.5331	146.7307	15.77	14	4	0
		04	083.6381A	83A	83.6381	21.3729	105.0110	58.3587	163.3698	17.52	28	21	2
		05	083.6381B	83B	83.6381	22.5654	106.2035	56.8597	163.0632	19.60	28	14	1
		06	084.8934A	84A	84.8934	20.6546	105.5480	59.2346	164.7826	17.78	14	10	1
		07	084.5951B	84B	84.5951	21.7767	106.3718	59.0265	165.3983	17.72	14	4	0
합 계											154	93	7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동	약식표기	호실	층구분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2023.04.15		2023.10.15	2024.03.15	2024.09.15	2024.12.15	2025.03.15	입주지정일
101동	75	505	5층	4	155,198,400	560,001,600	715,20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71,520,000	214,560,000
		605	6층		156,760,800	565,639,200	722,40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72,240,000	216,720,000
		705	7층		157,693,900	569,006,100	726,700,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72,670,000	218,010,000
		1305	13층		164,594,500	593,905,500	758,50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75,850,000	227,550,000
	83A	202	2층	21	167,155,100	603,144,900	770,30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231,090,000
		203	2층		167,155,100	603,144,900	770,30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77,030,000	231,090,000
		302	3층		167,979,700	606,120,300	774,100,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232,230,000
		402	4층		169,151,500	610,348,500	779,50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233,850,000
		403	4층		169,151,500	610,348,500	779,50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233,850,000
		503	5층		169,151,500	610,348,500	779,50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233,850,000
		602	6층		170,865,800	616,534,200	787,40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236,220,000
		603	6층		170,865,800	616,534,200	787,40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236,220,000
		702	7층		171,885,700	620,214,300	792,10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802	8층		171,885,700	620,214,300	792,10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803	8층		171,885,700	620,214,300	792,10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902	9층		171,885,700	620,214,300	792,10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903	9층	171,885,700	620,214,300	792,10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1002	10층		172,883,900	623,816,100	796,70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239,010,000			
		1102	11층		172,883,900	623,816,100	796,70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239,010,000		
		1202	12층		175,921,900	634,778,100	810,70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243,210,000		
		1203	12층		175,921,900	634,778,100	810,70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243,210,000		
		1303	13층		175,921,900	634,778,100	810,70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81,070,000	243,210,000		
		1402	14층		176,941,800	638,458,200	815,40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244,620,000		
		1502	15층		176,941,800	638,458,200	815,40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244,620,000		
		1503	15층		176,941,800	638,458,200	815,40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81,540,000	244,620,000		
	84A	201	2층	10	162,815,100	587,484,900	750,300,000	75,030,000	75,030,000	75,030,000	75,030,000	75,030,000	75,030,000	75,030,000	75,030,000	225,090,000		
		301	3층		163,639,700	590,460,300	754,100,000	75,410,000	75,410,000	75,410,000	75,410,000	75,410,000	75,410,000	75,410,000	75,410,000	226,230,000		
		501	5층		169,151,500	610,348,500	779,50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77,950,000	233,850,000		
		601	6층		170,865,800	616,534,200	787,40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78,740,000	236,220,000		
		701	7층		171,885,700	620,214,300	792,10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801	8층		171,885,700	620,214,300	792,10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901	9층		171,885,700	620,214,300	792,10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79,210,000	237,630,000		
1101		11층	172,883,900		623,816,100	796,70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79,670,000	239,010,000			
1301		13층	179,372,200		647,227,800	826,600,000	82,660,000	82,660,000	82,660,000	82,660,000	82,660,000	82,660,000	82,660,000	82,660,000	247,980,000			
1501		15층	180,413,800		650,986,200	831,40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83,140,000	249,420,000			
84B	704	7층	4	175,249,200	632,350,800	807,60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242,280,000			
	904	9층		175,249,200	632,350,800	807,60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80,760,000	242,280,000			
	1204	12층		182,887,600	659,912,400	842,80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84,280,000	252,840,000			
	1404	14층		183,950,900	663,749,100	847,70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84,770,000	254,310,000			
102동	50	205	2층	12	95,783,800	345,616,200	441,40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44,140,000	132,420,000			
		305	3층		96,261,200	347,338,800	443,60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133,080,000			
		405	4층		96,933,900	349,766,100	446,70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134,010,000			
		505	5층		96,933,900	349,766,100	446,70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44,670,000	134,010,000		
		805	8층		98,496,300	355,403,700	453,90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136,170,000		
		905	9층		98,496,300	355,403,700	453,90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45,390,000	136,170,000		
		1405	14층		103,378,800	373,021,200	476,40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47,640,000	142,920,000		
		702	7층		101,924,900	367,775,100	469,70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46,970,000	140,910,000		
		1102	11층		102,510,800	369,889,200	472,40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141,720,000		
		1202	12층		106,351,700	383,748,300	490,10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147,030,000		
		1302	13층		106,351,700	383,748,300	490,10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49,010,000	147,030,000		
		1502	15층		106,981,000	386,019,000	493,0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73	203		2층	28	146,995,800	530,404,200	677,40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203,220,000
			204		2층		146,995,800	530,404,200	677,40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67,740,000	203,220,000
			303		3층		147,733,600	533,066,400	680,80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204,240,000
304	3층		147,733,600	533,066,400	680,80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68,080,000	204,240,000			
403	4층		148,775,200	536,824,800	685,60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205,680,000			
404	4층		148,775,200	536,824,800	685,60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205,680,000			
503	5층		148,775,200	536,824,800	685,60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205,680,000			
504	5층		148,775,200	536,824,800	685,60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68,560,000	205,680,000			
603	6층		150,272,500	542,227,500	692,50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207,750,000			
604	6층		150,272,500	542,227,500	692,50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69,250,000	207,750,000			
703	7층		151,162,200	545,437,800	696,60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208,980,000			
704	7층		151,162,200	545,437,800	696,60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208,980,000			
803	8층		151,162,200	545,437,800	696,60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208,980,000			
804	8층		151,162,200	545,437,800	696,60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208,980,000			
903	9층		151,162,200	545,437,800	696,60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208,980,000			
904	9층	151,162,200	545,437,800	696,60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69,660,000	208,980,000					
1003	10층	152,051,900	548,648,100	700,70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210,210,000				
1004	10층	152,051,900	548,648,100	700,70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210,210,000				
1103	11층	152,051,900	548,648,100	700,70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210,210,000				
1104	11층	152,051,900	548,648,100	700,70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70,070,000	210,210,000				
1203	12층	154,721,000	558,279,0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213,900,000				

		1204	12층		154,721,000	558,279,0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213,900,000		
		1303	13층		154,721,000	558,279,0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213,900,000	
		1304	13층		154,721,000	558,279,0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213,900,000	
		1403	14층		155,632,400	561,567,600	717,20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215,160,000
		1404	14층		155,632,400	561,567,600	717,20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215,160,000
		1503	15층		155,632,400	561,567,600	717,20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215,160,000
		1504	15층		155,632,400	561,567,600	717,20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71,720,000	215,160,000
	83B	14	306	3층	160,428,100	578,871,900	739,30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73,930,000	221,790,000	
			406	4층	161,556,500	582,943,500	744,50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223,350,000	
			506	5층	161,556,500	582,943,500	744,50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74,450,000	223,350,000	
			606	6층	163,184,000	588,816,000	752,0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25,600,000
			706	7층	164,138,800	592,261,200	756,40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226,920,000
			906	9층	164,138,800	592,261,200	756,40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75,640,000	226,920,000
			1006	10층	165,115,300	595,784,700	760,90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76,090,000	228,270,000
1306			13층	168,001,400	606,198,600	774,200,000	77,420,000	77,420,000	77,420,000	77,420,000	77,420,000	77,420,000	77,420,000	77,420,000	77,420,000	232,260,000	
1406			14층	168,977,900	609,722,100	778,70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233,610,000	
1506			15층	168,977,900	609,722,100	778,70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233,610,000	
201			2층	173,686,800	626,713,200	800,400,000	80,040,000	80,040,000	80,040,000	80,040,000	80,040,000	80,040,000	80,040,000	80,040,000	80,040,000	240,120,000	
601			6층	177,484,300	640,415,700	817,900,000	81,790,000	81,790,000	81,790,000	81,790,000	81,790,000	81,790,000	81,790,000	81,790,000	81,790,000	245,370,000	
801			8층	178,525,900	644,174,100	822,70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82,270,000	246,810,000	
1101			11층	179,567,500	647,932,500	827,50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248,250,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050.7246	073.4544	075.2890	083.6381A	083.6381B	084.8934A	084.5951B
건본주택등의 약식 표기	50	73	75	83A	83B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사관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이 진행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1.) 현재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주택	1) : 해당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 2) : 기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거주자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기준) 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Ⅲ 청약신청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10.31.(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11.01(화)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 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차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

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당첨자 발표

■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1.07.(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11.18.(금) ~ 2022.11.22.(화)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번지)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jeu-verac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07.(월) ~ 2022.11.16.(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0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계약기간	계약장소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11.18.(금) ~2022.11.22(화) 10: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 당사 건본주택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번지)
	2순위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 비 서 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건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p>※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일반공급 (가정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비부양 지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부적격 통보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해당주택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내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위임인 인적사항 기재)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p>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p> <p>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p>
--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	301-0315-2253-91	대한토지신탁(주)

※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

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5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해야하며, 확장 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현관 중문**

- 본 아파트는 현관 중문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사양	제조사	설치위치	계약금액		
				계약금(계약시) 10%	잔금(입주시) 90%	합계
50 타입	AJ052BN1PBC1 AJ016BN1PBC2	삼성전자	거실+침실(1,2)	528,000	4,752,000	5,280,000
전 타입 (50타입 제외)	AJ072BN1PBC1 AJ032BN1PBC1 AJ020BN1PBC2	삼성전자	거실+침실1+침실(2,3)	704,000	6,336,000	7,040,000

- 시스템에어컨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위치의 조정이 발생 할 수 있음.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됨.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 됩니다.
- 고객 요청에 의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및 에어컨 개별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정상운전 시 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계약 시 입주예정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덕션 국밥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사양	제조사	설치위치	계약금액		
				계약금(계약시) 10%	잔금(입주시) 90%	합계
전 타입	NZ63T5701AK	삼성전자	주방	82,500	742,500	825,000

■ 비스포크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사양	제조사	설치위치	품목	계약금액		
					계약금(계약시) 10%	잔금(입주시) 90%	합계
50 타입	RB33A3004AP RQ34A7845AP	삼성전자	주방	콤비냉장고(냉장+냉동)+ 비스포크(김치냉장고)	363,000	3,267,000	3,630,000
전 타입 (50타입 제외)	RR40A7995AP RZ34A7865AP RQ34A7945AP	삼성전자	주방	비스포크 (냉장+냉동+김치냉장고)	649,000	5,841,000	6,490,000

■ 유상 추가선택 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국민은행	519701-01-331165	한일건설(주)

■ 추가선택 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임.
- 추가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 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추가선택 품목에는 선택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크기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별 추가선택 품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됨.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설치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단종, 품절, 품귀 또는 제조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급사양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당해 아파트는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미확장 또는 부분확장의 선택은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 조건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특정회사의 제품명기된 사항은 견본주택용으로 동급사양으로 타사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포함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냉장고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샤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성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비확장 발코니는 외기에 면하는 실내 벽면에는 결로방지재가 일부 설치되나,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Ⅷ 기타

▣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의 허위기재나 변조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실행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을”이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또는 “갑”의 판단)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카달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경계선 밖의 용지, 녹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은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단지모형, 카달로그, 팸플릿 등의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 지상2층 커뮤니티정원 및 옥상정원 조경/시설물은 아파트 전체의 조화와 현장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위치, 형태, 크기,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커뮤니티정원, 옥상정원, 클린하우스 등의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시각적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몰딩설치, 저층부 식재 마감 등에 의해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 배기용 DRY AREA가 제연휀룸이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단지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DRY AREA, 제연휀룸의 위치 및 개소, 형태, 높이 등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며, 단지 배치 특성상 층수 및 창문형태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부 바닥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적현황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단지배치, 주동위치, 도로선형, 조경(수목,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 면적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등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외부창호(유리포함), 실외기실 그릴창은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입면계획, 배관 설치 등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재질, 유리 두께와 외장재 등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 없음(문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세대 내부 타일 적용부위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세대 타입별 적용 수량과 위치가 상이하하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인허가 결과에 따라 2층 세대 거실 전면 테라스와 거실 사이에 난간대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스배관으로 인하여 주방가구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현관에 설치되는 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본 공사시 제조사 및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유리 사양, 제품형태, 하드웨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엔지니어스톤 상판은 이음매가 발생하며, 본공사시 상판 이음매가 추가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 가전제품, 기전시스템, 창호류, 가구류(약세사리, 하드웨어 포함), 위생도기, 수전 등의 경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을”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는 것이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였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당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및 베라체 BI, 단지사인, 시설물사인 등 각종 사인계획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설치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 처리되지 않음.

- “을”은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시행인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공에 따라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걸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다용도실의 실외기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을”은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지하주차장 진동입 소음포함), 분진,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단지 저층부 및 일부 타입(라인)은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저층부와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을”은 “갑”(시공사 포함)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함.
- 1층 근린생활시설 창틀은 디자인, 사이즈, 재질,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건 공급대상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101동, 102동 1층에 근린생활시설, 101동, 102동 2층에 커뮤니티정원, 101동, 102동 옥상층에 옥상정원으로 구성
- 101동 75㎡타입은 인접 건물이 위치해 있어 거실과 주방 창호에 차면 시설이 설치되니, 이를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개별 입주자가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법 제15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을”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상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임.
- 본 설계 및 시공은 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을”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을”은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의 마감재 및 제품품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소화시스템은 “을”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공사시 시공제품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귀, 품질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하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을”은 “갑” 및 시공사가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대관협의 시 필요에 따라 건물 주변에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음벽에 의해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을”은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축약 카달로그, 간지, 홈페이지 안내문 및 기타 유인물 등 일체)에 표시된 개발계획이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갑”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을”은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사업승인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을”은 공장 생산 자재(타일), 무늬지, 천연석재 등의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일부 외산자재제외) 의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내부치수, 마감재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 분양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 단지 및 단지 주변 환경에 따른 배수 관계로 인해 단지 내에 공용 배수 관로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공용 배수관로의 삭제, 유지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설치될 시 시설물 이관 이후에는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용도, 현황, 레벨, 새로운 도로 개설 등 개발 여건 변화로 본 단지 경계부에 설치된 건축 및 토목 옹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단지 레벨, 출입구 추가 설치, 우·오수 관로의 위치 및 규격, 지하주차장 내 그릴창 삭제, 부대복리시설 삭제 및 추가 설치 등 실시공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 단지내 조경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 사업부지내 도시가스 공급 및 우·오수 배관시설등과 관련하여 지역 정압기, 오수정화조(옥외배기포함)등 해당 시설물 설치 필요에 따른 부지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부지에는 “을”의 별도 동의 없이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시행자인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고, 한일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사업대행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인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및 시공사 한일건설(주)이 연대하여 책임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대한토지신탁(주)는 본 사업의 사업대행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대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주)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대행 완료 즉시 고려대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승계된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 아파트는 주상복합 건물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건립 및 분양되며,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은 공동 사용하고 위치 지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향후 관리운영업체 선정 및 주차장 관리 여건에 따라 주차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오우수 배수시설, 저수조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시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의 동선, 입면형태(색채,재질,간판형태 모양), 실내 구획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층 커뮤니티정원, 옥상정원은 입주인들이 공동 사용하며, 조경의 형태,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실제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스포트)조명은 전시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냉장고,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 통신 감리
회 사 명	지오건축사사무소	(주)하늘천
감리금액	육억일천육백만원(₩616,000,000)부가세별도	일억이천칠백만원(₩127,000,000)부가세별도

■ 분양형태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태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고, 한일건설(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는 분양형태지신탁계약의 사업대행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
-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인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및 시공사 한일건설(주)이 연대하여 책임하며, 매수인은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대한토지신탁(주)는 본 사업의 사업대행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대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주)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대행 완료 즉시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게 승계된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된다.」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2-101-0013200호	46,739,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의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임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제주도 제주시 동광로 55, 1215호(이도일동)	220171-0021794
사업대행자	대한토지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110111-1492513
시공사	한일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08	110111-0016190

▣ 견본주택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375-5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jeju-verace.co.kr>

▣ 분양문의 : ☎ 064)747-000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